

이 문서는 등(초)본입니다

2026.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검찰주사(보): 이 평진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366 모욕

피 고 인 김정범 (500321-), 공장임대업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필동3가 62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보라(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현표(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3. 선고 2024고정100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노○균에게 “이리와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노○균의 법정진술, 황*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황*순, 노○균의 각 고소장,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노○균을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이유는 달리 하나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노○균이 제출한 녹음파일 중 [증 제3호증 피고소인의 모욕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확인한 결과(증거목록 순번25), 이는 약 8초 길이의 파일로 초반에 개가 짖는 소리와 누군가가 땅을 밟고 걷는 소리가 들리고, 파일이 녹음된 장소보다 원거리에서 남성이 “** 너 알아서 해”(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린 다음 다른 남성이 “이리 안 오냐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리 안 오냐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도 누군가가 땅을 밟고 걷는 소리도 함께 들린다.

나) 피해자 노○균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농사를 짓고 휴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한*주와 피고인 2명 외에 피고인의 세입자 윤*훈이 있었습니다. 윤*훈이 저희 집까지 쫓아오면서 화가 격앙되어 있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느냐고 하더라구요. 윤*훈이 하는 말을 들어 보니 피고인, 한*주가 흔히 말하는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신고를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피고인, 한*주가 윤*훈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윤*훈이 보복을 하겠다고 2차 피해를 예고했습니다. (노○균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윤*훈이 보복한다고 하고 나가니까 먼저 앞에 나와 있는 피고인에게 부모님이 간 것입니다. 외길 담장 건너편에 있었고, 부모님이 피고인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설사 그랬다고 해도 왜 그렇게 이간질을 했느냐고 했고, 그 사이에 저는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걸어가서 거의 근접했을 때 피고인이 욕을 하더라구요. (노○균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저는 당시 인식을 못했고, 부모님과 다투고 있어서 어머니한테 한 줄로 알았는데, 보통 여자한테 개자식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 그런데 추후에 경찰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 본인이 저한테 욕을 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노○균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당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양막이 쳐 있었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인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인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추측하기로는 부모님이 먼저 갔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차양막이 있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노○균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제가 차양막을 내리고 “왜 개자식이라고 욕을 했느냐, 옆에 있는 분은 나중에 일이 불거지면 꼭 증언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노○균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제5쪽)

차양막이 있어서 저한테 했는지도 분간이 어렵습니다. (노○균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녹음파일과 노○균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리안 오냐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은 차양막 너머에서 노○균의 부모님과 대화 중이었던 사실, 노○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

소사실 기재 욕설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앞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피고인과 노○균 사이에 차양막이 쳐져 있었던 사실, 노○균도 피고인이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노○균의 모친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였고, 노○균의 모친인 황*순이 고소를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2 제3쪽), 피고인이 노○균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하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연락을 받은 노○균이 다시 고소를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11 제49쪽) 등도 인정된다.

마)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① 대화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노○균의 부모님과 대화를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노○균에게 욕설을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② 녹음 파일의 음성 크기에 비추어 피고인과 노○균 간 거리도 지근거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할 당시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는지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④ “이리 안 오냐”라는 말은 보통 자신에게서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은 하나, “** 너 알아서 해”, “**”라고 말한 남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노○균에게 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노○균은 아무 말 없이 피고인에게 접근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노○균에게 욕설을 한 원인인 “노○균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는 것도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사)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노○균을 모욕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4. 26. 14:35경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355-15번지에서, 윤○훈, 한○주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노○균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_____

 판사 이아람 _____

 판사 유지영 _____